

붙임 5

우대가점 기준

□ 가산점 총괄표

유형	가점대상	전형단계				우대사항	부여기준
		서류	필기	면접 ①	면접 ②		
법정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	✓	✓	✓	5% 또는 10% 가점	관련 법령에 따름
어학	제2외국어	✓				2~3% 가점	(상세기준 1) 참조
사회적 배려 대상	장애인	✓	✓			5% 가점	(상세기준 2) 참조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고졸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가점 부여 기준에 따름

□ (상세기준 1) 제2외국어

구분	인정시험	인정등급 및 배점	
		2%	3%
프랑스어	DALF DELF FLEX	DELF B1 FLEX 2A, 2B	DALF 모두 인정 DELF B2 이상 FLEX 1A, 1B, 1C
스페인어	DELE FLEX	DELE B1 FLEX 2A, 2B	DELE B2 이상 FLEX 1A, 1B, 1C
러시아어	TORFL FLEX	TORFL 1단계 FLEX 2A, 2B	TORFL 2, 3, 4단계 FLEX 1A, 1B, 1C
아랍어	아랍어 전공	아랍어 전공(학사)	아랍어 전공(석사 이상)

□ (상세기준 2) 사회적 배려대상

구분	대상 기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 또는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자
고졸자	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이하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하나 대학(전문대학) 재학·휴학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은 제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